



## 5. 질의 및 답변

○ 문 : 근무지내 출장 공무원(운전원 포함)의 여비지급이 상위법령에 벗어나지는 않는지 ?

● 답 : 지방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도내 사천, 창원시 등에서도 관련 조례를 이미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 : 신설하는 조 “제2조의 1” 을 제2조의 2 “로 조문의 체계에 맞게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

● 답 : 예, 알겠습니다.

## 6. 토 론 : 없음

## 7. 심사결과

○ 신설되는 조례안 “제2조의 1” 을 “제2조의 2” 로 자구수정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